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 및 우수 특구에 대한 지원 등 특구의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향 조사, 연구·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지원·융자,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제공,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II. 검토의견

- 안 제18¹⁾조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²⁾의

- 1) **안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적용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과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의 문언에 따르면 별칙 적용을 위한 공무원 의제 대상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업무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직원 전원이 공무원 의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형벌 법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책임 귀속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과도한 적용이 될 우려가 있음³⁾.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3)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따라서 공무원 의제의 적용 범위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u>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u>사람은</u> ----- ----- ----- ----- -----.
1.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u>전담 기관</u>	1.----- ----- <u>기관의 임직원</u>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u>업무를 수행한</u> 기관·법인 또는 <u>단체</u>	2.----- ----- <u>업무</u> <u>에 종사하는</u> ----- <u>단체의 임직원</u>

-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